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2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2월 27일

3. 제안이유

○ 종전에는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업무를 도지사가 조례로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업무집행 권자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함에 따라

○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

○ 과태료 부과기준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

○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점에 대하여 상위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골자

○ 과태료 부과대상중 신고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 (제2조제7항 및 제8항)

○ 과태료 감경 또는 가중 규정 삭제(제3조 제1항 단서 및 후단)

○ 과태료 부과기준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규정 삭제(제3조제1항 별표)

○ 과태료 납부처를 도금고로 조정(제3조제2항제1호 별지 제1호 서식)

○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점 조정(제4조제1항)

·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날부터 →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고체육시설업 업무집행권자를 시장·군수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 개정 즉시 개정조치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으로 사료됨